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31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이소영·복기왕·김준혁

박지원 · 차지호 · 위성곤

박지혜・김 윤・김문수

권향엽 • 박용갑 • 강준현

김용만 • 박희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 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축물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정책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헌법기관의 구분 없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 헌법기관에만 '자발적으로'라 는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은 정부의 지 도·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의무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참 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바, 온실가스감축 목표관리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및 제6항 개정, 제31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발적으로 설정하여"를 "설정하여"로 한다.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상 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 격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① ~ ④ (생 략)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	5
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u>०</u>] ठॅं}
"헌법기관등"이라 한다)는 기관	
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여	설정하여
야 하며, 그 실적을 정부에 통	
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정부는 통보받은 실적에 대	
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	6
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	
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	
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	
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	
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u>자발</u>	
<u>적으로 설정하여</u> 이행할 수 있	<u>설정하여</u>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 · 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 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7) (생략)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 ⑥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7) (현행과 같음)

- (b) (현행과 같음)
- ⑦ 헌법기관등은 건축물을 녹 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 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시책을 적용 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관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기 관등은 해당 기관의 성격을 고 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책의 범위에서 그 내용과 이 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⑧ 헌법기관등은 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을 정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정부는 헌법기관등이 제7항 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ㆍ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u>수 있다.</u>
<u>⑦</u> (생 략)	<u>⑩</u>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생 략)	<u>①</u> (현행 제8항과 같음)